교육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배포 2026. 11. 17.(화) 08:00 보도시점 (인터넷)2026. 11. 17.(화) 국무회의 종료 시
(지 면)2026. 11. 17.(화) 국무회의 종료 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지난 5월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26.11.20.)에 따른 후속 조치
- 약학교육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 의무화에 따른 평가·인증 절차 등 규정
- 약학교육과정 운영학교의 평가·인증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근거 마련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1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약학과정운영학교)도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와 동일하게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고등교육법」이 개정('26.5.19. 공포, '26.11.20.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되었다.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약학과정운영학교도 의료과정운영학교와 동일하게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약학과정운영을 개시하려는 학교는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인증받은 학교의 유효기간 만료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약학과정운영학교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인증 결과를 학교의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학년도마다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모집 요강을 통해서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내용

약학과정운영학교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못했을 때에 대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료과정운영학교와 동일하게 1차 위반 시에는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2차 위반 시에는 전공학과 등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약학과정운영학교에도 의료과정운영학교와 동일한 평가·인증 절차와 결과 공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 37개 약학과정운영학교는 약학교육의 교육 여건 개선과 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학생들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보건·의료계열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해당 분야의 인력 양성 기반이 견고해지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학생의 주거 형태, 임차료, 주거환경 만족도 등을 파악하는 '학생주거실태 조사'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교육부 누리집 등에서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대학생 주거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약학교육 분야에서도 다른 의료교육과정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하고 투명한 질 관리 체계가 갖춰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전국 37개 약학대학이 우수한 보건·의료 인재양성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담당 부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대학정책관	책임자	과장	조훈희 (044-203-6830)
		담당자	서기관	김수진 (044-203-6911)
<고등교육법 시행령 (주거실태조사)>	대학시설지원과	책임자	과장	최문태 (044-203-7172)
		담당자	사무관	김중훈 (044-203-718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의학·치의학 등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와 동일하게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654호, 2026.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의학·치의학 등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절차 등을 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도 적용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9. 8. ~ 10.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절차)”를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한의학·간호학 또는 약학”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중 “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한의학·간호학 또는 약학”으로, “의료과정운영학교”를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로 한다.

제2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과정운영학교”를 각각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의료과정운영학교”를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평가·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이루어

진 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평가·인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제2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인증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절차) ①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하려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조의2(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절차) ①----------한의학·간호학 또는 약학----------.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라 한다)로서 인증을 받은 학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한의학·간호학 또는 약학----------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정기관은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④ ----------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

만료되기 전까지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 또는 제3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인증을 재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전단에 따라 재신청한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방법·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	2. ----------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 의료 및 약

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학과정운영학교--------
제3조(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등) ① (생 략)	제3조(평가·인증 결과의 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인증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과정운영학교의 장은 학년도마다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모집 요강을 통해서도 공개하여야 한다.	② ---------- ---------- ---------- ----------. ------ 의료 및 약학과정운영학교--------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대학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383

붙임2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고 등 교 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에도 의학·치의학 등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와 동일하게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654호, 2026.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며, 학생 주거실태조사 업무는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도록 하고, 약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8. 21. ~ 9. 30., 9. 8. ~ 10.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11을 제4조의13으로 하고, 제1장에 제4조의11 및 제4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1(학생 주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학생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

2. 수시조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기간·대상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주거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주거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⑥ 주거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3. 주택가격 및 임대료

4. 학생 가구의 구성 및 소득

5. 조사 대상 학생의 성별, 학년, 학교, 통학거리 및 거주 지역 등

6. 그 밖에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12(학생 주거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5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지정하여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5제3항 전단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법인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별표 4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를 위반하여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또는 약학 전공 학과등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해당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또는 약학 전공 학과등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

부 칙

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11(학생 주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학생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 2. 수시조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기간·대상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주거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주거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⑥ 주거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3. 주택가격 및 임대료 4. 학생 가구의 구성 및 소득 5. 조사 대상 학생의 성별, 학년, 학교, 통학거리 및 거주 지역 등 6. 그 밖에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4조의12(학생 주거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5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지정하여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5제3항 전단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법인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4조의11 (생 략)	제4조의13 (현행 제4조의11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대학시설지원과 교육부 대학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7181 (044) 203 - 6383